

법령 I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

비상대비에 관한 법률(시행령 포함)

문 1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국무총리는 2년마다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ㄴ. 기본지침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.
- ㄷ. 국무총리가 작성한 기본지침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모든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ㄹ.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
문 2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
-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에게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.

문 3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·점검할 수 있지만, 확인·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거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.
-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물자의 품목·규격·수량·대체 및 관리 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축한 물자가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.

문 4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군수는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- ㄴ. 장교 중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현역에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,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할 당시 전역 후 3년이 지난 사람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.
- ㄷ.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사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ㄹ.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ㄹ
- ③ ㄷ, ㄹ
- ④ ㄱ, ㄷ, ㄹ

문 5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·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(시험제품의 제작 포함)을 하게 할 수 있다.
- ㄴ. 중점 관리해야 할 물자를 지정하는 경우 물자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지정한다.
- ㄷ.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는 2년마다 소관 중점관리대상 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ㄹ.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ㄹ
 ② ㄴ, ㄷ
 ③ ㄱ, ㄴ, ㄷ
 ④ ㄴ, ㄷ, ㄹ

문 6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회가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훈련의 실시명령은 대통령이 발령한다.
-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가 발령한다.
- ④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한다.

문 7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의 확인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책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·평가할 수 있으며,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·평가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·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·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국무총리는 확인·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문 8.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고유식별정보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무총리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-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인력자원·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·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-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에 관한 자격 등의 부여 또는 취소 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문 9. 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상 비상대비훈련과 다른 훈련 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훈련부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?

- ① 인력자원에 대한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— 비상대비훈련 —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훈련
- ② 「예비군법」에 따른 예비군훈련 — 비상대비훈련 — 인력자원에 대한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력동원훈련
- ③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훈련 — 동시관리훈련 — 「예비군법」에 따른 예비군훈련
- ④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훈련 — 인력자원에 대한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— 비상대비훈련

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10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가정보원장, 인사혁신처장,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에 포함된다.
- ②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중앙민방위협의회의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재난구호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.
- ④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·광역시·도민방위협의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둔다.